

사업재편의 미래,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제6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AI·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년부터 5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법률·회계·금융·고용 분야 등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26.8.10(월)부터 8.21(금)까지 2주간 청년인재 DB*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산업 진출 타당성,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하게 된다.

* 「청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호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044-203-4231)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구 성) 전체 위원 20명 중 정부 당연직 5명, 국회추천 전문가 4명 외 민간 위원 11명(청년위원 3인 포함)은 산업부 장관이 위촉

* 당연직: 산업부 차관(공동위원장), 기재부·법무부·공정위·금융위 1급

- (민간위원 자격요건)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필요,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시행령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회계사 (자격보유자)	기업 법무회계,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 경력 10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년 + 사업재편 경력 5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혹은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심의유형 및 분야) ①과잉공급 해소, ②산업위기지역 대응, ③신산업 진출, ④디지털 전환, ⑤탄소중립, ⑥공급망 안정

○ (분야) △산업·기술, △자금조달, △기업경영, △법무, △특허 등

⇒ ①산업·경제, ②금융투자, ③경영전략, ④재무회계, ⑤상법, ⑥공정거래, ⑦고용, ⑧특허·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 위촉

- (역 할)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운 영)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며, ①예비심의위원회(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②본 심의위원회(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로 운영